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2004. 7.29. 회의

의견제시 : 김광이

○ 7조 평등과 차별금지-제3항

1) 3항을 존치시킬 경우 제5항의 “....대책들은 현재의 조약에서 정의된 차별들로만 생각해서는 안되며, 또한 불평등하고 분리적인 표준들을 유지하는 결과로써 함축해서는 절대로 안된다.”와 상호모순 가능성 있음.

즉, 차별을 불평등하고 분리적인 표준들을 유지하는 결과를 함축하는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제3항을 인정할 경우에 정당화된 규정 표준 관습과는 다음과 같은 모순이 있다.

첫째, 제3항에서 말하고 있는 정당화된 규정 표준 관습이 분리적인 표준들을 유지하는 것일 경우

둘째, 정당화된 규정 표준 관습이 불평등과 분리적인 표준을 유지하는 결과를 함축하는 것으로 “만 보아서는 안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또한 제3항은 각 국가에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이라는 이유로 국가 제도에 의해 오히려 사회적 차별을 공고하게 인정하거나 묵인하게 할 가능성이 많다.

3) 따라서 3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만약 삭제에 대해 반대하는 국가가 많다면 다음과 같은 성격의 단서 문구가 있어야 한다.

“(단 그 규정 표준 관습에 의하여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차별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것이 되지 않는다.”)

1. 관습에 의한 차별